

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. 9. 16.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
- 발 의 자: 박정환 의원 등 5명
- 발의일자: 2025. 9. 3.(수)
- 회부일자: 2025. 9. 3.(수)
- 상정 및 의결: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(2025. 9. 16.)

2. 제정이유

- 본 조례안은 「아동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,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을 지정 및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와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아동보호구역의 지정, 공고, 해제 절차 규정(안 제5조)
- 라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사업추진 등의 사항 규정(안 제6조~제7조)
- 마. 시설물 설치 및 기관·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~제9조)
- 바. 사업 협력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
 - 「아동복지법」 제32조
 -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제29조 및 제30조
- 비용추계서
 - 해당 없음 (비대상)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이 제정조례안은 안전한 환경에서 아동이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,
- 주요 내용은
 - 안 제2조에서 아동보호구역,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,
 - 안 제5조에서는 해당지역의 연간 아동범죄 발생 현황 조사 등을 거쳐 아동보호구역 지정하고, 해당시설의 이전·폐쇄로 지정사유 소멸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 - 안 제6조에서는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
 - 안 제7조에서 비상벨·안내판을 설치, 아동안전보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, 안 제8조 관련 시설물 설치는 「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」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9조에서는 관련 기관·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- 『2023 범죄분석』(2023년 대검찰청)에 따르면, 약취유인범죄 중 58.5%(349건 중 204건)가 13세 미만 아동대상 유괴범죄였으며, 아동유괴범죄

의 49.5%(101건)가 노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, 이러한 현황으로 볼 때 아동이 활동하는 시설 주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·운영하도록 한 본 조례안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